

1.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후 체불사업주로부터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시, 도급사업에 있어 근로자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게까지 변제금 납부 책임을 확대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137호, 2025.11.11. 공포, 2026.5.12.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제금의 납입통지(안 제8조의13 신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변제금의 납부를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법 제8조의2)
- 개정령안 제11조의2에서는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변제금 납입 통지를 할 것과 납입통지 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는바,
- 시행규칙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신설, 변제금 납입고지서에 따르도록 구체적인 납입통지의 방식을 규율하고자 함(안 제8조의13)

나. 변제금 납부의 독촉,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안 제8조의14, 15 신설)

-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제2항 및 개정령안 제11조의

3에서 변제금의 징수에 관해 준용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시행규칙에 신설되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변제금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8조의14)
- 또한, 납부기한 전에 변제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신설하여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를 것을 규율함(안 제8조의15)

다. 변제금의 징수(안 제8조의16 신설)

- 그 밖의 변제금 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3조의3에 따르는 경우를 명시하고자 함

라. 변제금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취소(안 제8조의17 신설)

-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주 중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변제금 등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할 경우를 열거함

마. 직상 수급인 등의 연대책임(안 제9조의2제2항제2호 개정)

- 체불사업주 및 연대책임자에 대한 별지 제5호 및 제7호의3서식의 주요 기재사항을 정비하고,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함을 명시하

고자 함

바. 업무처리규정(안 제13조제1항제3호 개정)

- 공단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열거함에 있어 법 제8조, 제8조의2에 따른 청구권 대위 및 변제금의 징수에 관련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13부터 제8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13(변제금의 납입통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입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제금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제8조의14(변제금 납부의 독촉)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변제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제금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15(변제금 등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라 변제금 등을 납부 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제8조의16(변제금의 징수)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관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17(변제금 등의 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

11조의4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당초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었던 변제금 등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여야하는 변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로, “수급인”을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 및 제8조의2”로, “대위”를 “대위 및 변제금의 징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 뒤쪽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대장번호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사일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개시일	상시근로자수	
			명

지급 사유 및 지급 요건	(도산·파산·회생절차 개시)의 인정일 또는 결 정일	년	월	일	체 불 임 금 등	최종 1개월분	임금		원	
								휴업수당		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원
	(도산·파산·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	년	월	일			최종 2개월분	임금		원
								휴업수당		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원
	신청자의 퇴직일	년	월	일			최종 3개월분	임금		원
								휴업수당		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원
	신청자의 퇴직당시 나이	만				세	퇴 직 급 여 등	최종 1년분		원
						최종 2년분		원		
						최종 3년분		원		
※판정구분		적격	부적격		체 당 금	계		원		
근로자의 지급대상 요건 판정				임금			원			
	(인)	(인)		휴업수당			원			
사업주의 지급대상 요건 판정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원			
					퇴직급여등		원			

연대 책임자	적법한 직상 수급인	사업장명		사업지등록번호		
		법인 여부		[]법인 []개인	법인등록번호	
		실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명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상위 수급인	사업장명		사업지등록번호		
		법인 여부		[]법인 []개인	법인등록번호	
		실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명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귀하가 신청하신 확인사항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 확인통지서를 보는 법

- 확인통지서의 굵은 선 안의 “판정 구분”란은 귀하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결과 귀하가 대지급금의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 난 중 “적격”란에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하는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며, “부적격”란에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하는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란의 굵은 선 안에 적힌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확인통지서상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아래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귀하가 제출하신 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적힌 귀하의 예금계좌로 대지급금이 입금됩니다. 대지급금의 지급은 귀하의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또는 지사에서 지급하게 되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관서의 전화번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000) 000-0000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0000) 000-0000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 퇴직자용
[] 재직자용

(앞쪽)

발급번호

① 체불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기간						
	근로계약기간 (재직자인 경우)	[] 1개월 이상 [] 1개월 미만	임금액 (재직자인 경우)	시간당 () 원			
	임금산정기간						장기임금지급일

② 체불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지등록번호		
	법인 여부		[] 법인 [] 개인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실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명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체불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						건설공사 해당여부	[] 해당 [] 미해당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③ 연대 책임자	적법한 직상 수급인	사업장명					사업지등록번호		
		법인 여부		[] 법인 [] 개인			법인등록번호		
		실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명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상위 수급인	사업장명					사업지등록번호		
		법인 여부		[] 법인 [] 개인			법인등록번호		
		실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명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④ 체불 임금등 내역 (원)	총 금액	원						
	최종 (마지막) 3개월 (3년)분	구분	계	임금	퇴직급여등 (퇴직자인 경우)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재해보상금 (퇴직자인 경우)
		계						
		최종(마지막) 1개월(1년)분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최종(마지막) 2개월(2년)분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최종(마지막) 3개월(3년)분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비고								

⑤체불 임금등 및 그 밖의 금품등의 상세내역(원)

구분	합계	임금	퇴직급여등 (퇴직자인 경우)	상여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그 밖의 금품	
계									
0000년 00월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확인 근거	객관적 자료	[]있음 () []없음							
	사업주 조사	[]사업주 조사 실시 ([]전부 인정 []일부 불인정 []전부 불인정) []사업주 조사 미 실시							
사용 용도	구분	[]소송 제기용(법률구조 등) []대지급금 청구용(법 제7조제1항제5호) []기타 ()							
	신청부수								
확인자	근로감독관 ○○○○ (전화번호:)								
첨부 서류	1.	참고	①수사 중 ②취하종결 ③범죄인지						
	2.		④기소송치 ⑤불기소송치 ⑥기소중지 송치						
진정등 제기일		최초 발급일							
비고									

귀하의 체불 임금등 및 체불사업주에 관한 증명 신청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발급합니다.

20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비고

- 퇴직금에 대한 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첨부합니다.
- ① “체불 근로자” 란의 임금액은 재직자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금액을 적습니다.
- ④ “체불 임금등 내역” 란의 최종(마지막) 1개월(1년)분, 최종(마지막) 2개월(2년)분, 최종(마지막) 3개월(3년)분은 퇴직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개월(1년)씩 소급한 기간 동안, 재직자의 경우에는 체불에 대한 진정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1개월씩 소급한 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등의 내역을 적습니다.
- ⑤체불 임금등 및 그 밖의 금품등의 상세내역란은 근무한 기간을 월별로 구분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2015년 5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또는 체불에 대한 진정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이 5월 16일인 재직자의 경우), 2015년 5월<2015년 5월 1일~5월 16일>, 2015년 4월<2015년 4월 1일~4월 30일>, 2015년 3월<2015년 3월 1일~3월 31일>, 2015년 2월<2015년 2월 1일~2월 28일>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해당 기간의 체불 임금등의 내역을 적습니다.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되고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법 제7조의2에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법 제7조의2에서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서에 적힌 사업주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근로한 사실이 없거나, 임금 체불 사실이 없음에도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 체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체불된 것처럼 속여 대지급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신청한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안내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금액 입금
 - ※ 가상계좌별 납부할 금액과 입금금액이 일치해야 입금 가능
(타행 입금시 수수료 별도)
- 이용가능시간 :
 - ※ 예약이체, 대량이체 불가

인터넷지로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접속하여 납부
 - ※ 납부경로 : '기금 및 기타국고' 를 선택하여 전자 납부번호로 입력 · 조회 후 납부
- 이용가능시간 :

CD/ATM기 납부

- 「공과금 납부창」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
- 이용가능시간 :

공과금수납기 납부

-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
- 이용가능은행 : 공과금수납기가 비치된 은행
- 이용가능시간 :

납부방법 안내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금액 입금
 - ※ 가상계좌별 납부할 금액과 입금금액이 일치해야 입금 가능
(타행 입금시 수수료 별도)
- 이용가능시간 :
 - ※ 예약이체, 대량이체 불가

인터넷지로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접속하여 납부
 - ※ 납부경로 : '기금 및 기타국고' 를 선택하여 전자 납부번호로 입력 · 조회 후 납부
- 이용가능시간 :

CD/ATM기 납부

- 「공과금 납부창」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
- 이용가능시간 :

공과금수납기 납부

-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
- 이용가능은행 : 공과금수납기가 비치된 은행
- 이용가능시간 :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상 호 · 법인명	대표자 또는 연대책임자
	소재지	

납부 기한 전에 징수하는 변제금의 내용

구분	근로자명	지급일자	변제금 내역					당초 납부 기한	변경된 납부 기한
			임금	퇴직 급여등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합계		

납부 기한 변경 사유	
-------------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 기한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팩스()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조의13(변제금의 납입통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 의 납입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변제금 납입고지서에 따른 다.
<u><신 설></u>	제8조의14(변제금 납부의 독촉)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 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 업주에게 변제금의 납부를 독촉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변제금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8조의15(변제금 등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8조의2제2항 에서 준용하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라 변제 금 등을 납부 기한 전에 징수하 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 서에 따른다.
<u><신 설></u>	제8조의16(변제금의 징수) 법 제8 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관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

<신 설>

제9조의2(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17(변제금 등의 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1조의4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당초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었던 변제금 등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의2(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1.·2. (생략)

3.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업무

4.·5. (생략)

② (생략)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8조 및 제8조의2-----
----- 대위
및 변제금의 징수-----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